

→ 제출서류

대상자	제출서류(택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 소득자 (상시, 일용)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프리랜서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장, 국세청 발행 2. (별도서식)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신고서 - 근로계약체결서 - 급여지급명세서 - 급여지급 통장내역서 사본 등
<p>사업자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득금액증명원 2.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 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3.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장, 국세청 발행 4. (별도서식) 소득(매출)감소신고서 - 휴·폐업사실증명서 - 매출전표 - 거래업체 거래내역 확인자료 - 거래내역 통장사본
<p>증빙자료가 없는 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별도서식) 소득(매출)감소 신고서 작성 제출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 코로나19 중수분 한시생계지원 **1577-9333**

복지로 신청 QR코드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이 감소하여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

한시 생계지원

이렇게 신청하세요



한시 생계지원이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시 생계비(1회)**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 가구***

* 주민등록기준 가구 단위 지급, 소득감소,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원 이하(대도시)
- '21. 3. 1. 기준 주민등록가구

☑ 소득감소 기준

2019~2020년 대비 현재('21. 1. ~ 5.) 소득이 감소한 가구

가구구성

'21. 3. 1일 기준 주민등록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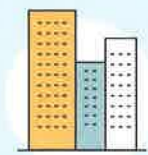
소득기준

2019~2020년 대비 현재('21. 1.~ 5.) 소득이 감소하여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단위: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기준 중위소득 75%	1,370,873	2,316,059	2,987,963
	4인	5인	6인
	3,657,218	4,318,030	4,971,452

재산기준



대도시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5억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

☑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자금플러스,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어업인지원, 피해임업인지원,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신청방법 및 결정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복지로(www.bokjiro.go.kr)
세대주만 신청 가능(휴대전화 본인인증)

'21. **5. 10.**(월) ~ **5. 28.**(금) 22:00
홀짝제(출생연도 끝자리)



현장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신청가능

'21. **5. 17.**(월) 09:00 ~ **6. 4.**(금) 18:00

[집중 신청기간 운영]
'21. **5. 17.**(월) ~ **5. 28.**(금)

지원금액

1가구 / 50만원 / 1회 지급
*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 중복대상자는 “차액(20만원) 지급가능”

지급 우선순위

한시 생계지원 신청 인원이 초과할 경우, 부득이 **지급 결정 우선순위**(본인 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를 제출한 자 중 ① 공적자료 조회 결과 소득금액이 적은 가구 ② 공적자료 조회 결과 재산가액이 적은 가구)를 **적용**할 수 있음